

2026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시행지침

1. 사업목적

-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
-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
-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

2. 지원근거

-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(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)
-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

3. 사업시행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
- 사업비 : 99,000천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
 - 사업단가(3.3㎡당) : 한도액 3,300천원/3.3㎡~1평 (10평기준 33,000천원)
- 사업내용 :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**신규 설치**
 - *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,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경우 **지원 불가**

나. 사업대상자

- 지원대상 :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등
- 지원규모 : (농업인) 33㎡~132㎡/개소
(영농조합법인) 66㎡ ~ 264㎡/개소

4. 사업추진요령

가. 시공업체 선정

- 사업자는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**적격업체**를 선정
- 전문시공업체 선정
 - 부설시공방지,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**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 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**
 - * 단, 사업대상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(시공업체)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(계약서 작성 시 공동계약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, 단순 자격대여는 금지)
- 시공업체로 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

나.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

-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,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
 - **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**하고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**향후 1~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**
- 저온저장고 설치기준
 - 저온저장고 설치 시 「**농가형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 및 시설공사 내역서**」를 준용하여 설치 ※ 도 친환경농업과-7507(2022.5.4.)호 참조
 -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(상반기) 완공토록 지도 철저
 -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,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
 - * 보조결정 사업량(사업비)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
 - 시설·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·설치
 - **설치완료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**
 - ※ 부동산 미등기 시 보조금 지급불가 또는 환수조치
-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
(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기 시 등기요령을 준수하여 등기하여야 함)

설치기준

- 외관철판 : 0.45mm이상(양면 합산 0.9mm이상)
- 벽 두께 : 100mm이상,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 사용
- 냉 동 기 : 10평형 5마력 이상 등으로 채택
- 유니트쿨러(송풍기), 증발기(제상용) 각 1대
- 기타 부속장비(KS제품) : 전원차단기, 전압계, 전류계, 온도조절 및 표시기, 경보등 등
- 야외 설치 시 지붕은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

-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
-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설시공 사전 방지(현지 출장 및 점검)노력
-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
 - 사용자재(KS제품, 신품 등) 확인(중고품 등 사용방지), 시운전 등
 -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보완 요구
 -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(A/S)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
-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(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, 계좌이체만 원칙, 현금무통장입금은 불가)
- ※ 계좌거래의 증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계좌거래내역서로 한정

다. 사후관리단계

- 읍·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·장비·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
- 지원대상자(생산자 단체)별 관리대장을 비치·활용하고, 완료된 시설·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
-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, 임의처분,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기준
	부터	까지	
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	시설설치 완료시	10년간	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(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)
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	장비구입시	5년간	

-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(압착철판) 부착

* 규격 : 가로 60cm 이상, 세로 30cm 이상(녹색바탕에 흰 글씨)



2026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



- 규 모 : 33 m²
- 사 업 비 : 천원(도비0,000, 시군비0,000, 자부담0,000)
- 설치년도 : 2026. . . (해제일자 : 2036. . .)
- 사 업 자 : 예시) 예천읍 충효로 111 홍길동
- 시공업체 : 예시) 주)예천냉동 (Tel 054)650-6274)

-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
 -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 『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』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, 행정벌 부과
 -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
 -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(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)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
 -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
-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
 - 2024년 과수,채소,특작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

【서식 1】

2026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

신청자	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소					
	설치예정장소	(지목 :)				
작목 재배현황	구분	품목별				
		계	○○○	○○○	○○○	○○○
	재배면적	ha				
	생산량	톤				
	저장예상량	톤				
	영농경력	년	보조지원 수혜유무			
신청내용	사업명	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				
	규모	m ² (평)	유형	신규(), 개보수()		
	사업비	천원(도비 , 시군비 , 자부담)				
	설치장소					
	활용방법	단독활용(), 2농가활용(), 3농가이상 활용()				
저장고 보유상태		기보유 : m ² (지원, 자부담), 미보유				
2026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6. 1. . 신청자 인 예천군수 귀하						
<구비서류> 1.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: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. 설치 부지 확인서류 : 토지 등기부등본(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) 3.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						

【서식 1-1】

농가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

사업자	주 소						
	성 명		(연락처)				
사 개 요	설치장소						
	규 모		㎡/ 평 (지원년도)				
	사 업 비		천원 (도비 , 시군비 , 자부담)				
관 리 상 태	연도별	점검일	점 검 자		관 리 상 태	조 치 사 항	저장품목
			직	성 명			
	2026						
	2026						
	2027						
	2028						
	2029						
	2030						
	2031						
	2032						
	2033						
	2034						
<저온저장고 설치 사진대지>							

교 부 신 청 서

1. 보조사업명
2. 사업소재지
3. 보조금 신청액
4. 자기자본 부담액
5.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6. 사업수행기간
7. 기 타

1. 사 업 명

2. 사업내용

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위와 같이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
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년 월 일

주 소
단체명(성명)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 :
성 명 : (인)

※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
○ 확인자 : 소속 직 성명 (인)

예천군수 귀하

예천군수 귀하

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○ 사 업 명 :

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,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(개인보조포함)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별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~ 제40조) >

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- 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- 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년 월 일

□□□단체 대표 (서명)

□□□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(서명)

예천군수 귀하

1. 보조사업명 :

2. 소요사업비 :

3. 사업개요

- 사업취지 및 목적
- 사업기간 :
- 사업소재지 :

4. 추진실적

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5. 입금계좌번호 :

붙 임 :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.

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성 명 : (인)

예천군수 귀하

사업비 집행 세부내역

- 1. 사 업 명 :
- 2. 사업소재지 :
- 3. 보조사업자 :
- 4. 사업비집행 세부명세

세부사업명 (시설명)	단 위	수 량	단 가 (천원)	집행액 (천원)	비 고
계					

보 조 금 정 산 서

- 1. 사 업 명 :
- 2. 사업기간 :
- 3. 보조금 집행사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집 행 액	잔 액	비 고
계				

※ 첨부 : 자체구입 및 각종관련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영수증, 사진대지 등)

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성 명 : (인)

예천군수 귀하

사업완료확인서

1. 사 업 명 :
2. 사업기간 :
3. 사업자
 - 주 소 :
 - 성 명 :
4. 사업완료 확인내역

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

년 월 일

확인자) 소속) 직) 성명) (인)

예천군수 귀하

사 진 대 지

농 가 명 (대표자)		사업장 위치	
『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,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』			